

※ 한국전력공사 가정용 전기자동차 충전비용 안내

- 2020년 7월부터 한국전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자가소비용) 요금부과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한국전력에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전용 요금을 신청한 고객으로서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한 고객

○ 신청방법

- 전력신설 : 전기사용신청을 통해 별도의 전력을 신설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납부)  
 - 이미 구축된 전력에 변압기공동이용을 신청하여 별도의 계량기를 받은 고객 (모자분할방식)

○ 변경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목적으로 2017년도에 시행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3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요금 및 전력요금 특례적용을 실시함.  
 - 해당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2019년을 기준으로 폐지되었으나 6개월간 연장 및 1년단위로 잠정적 폐지로 개정됨.

※ 한국전력 전기자동차 충전비용 개정안 안내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기간		2017.01.01. ~ 2020.06.30.	2020.07.01 ~ 2021.06.31 까지	2021.07.01 ~ 2022.06.31 까지	2020.07.01. 이후
할인율	기본요금	100%	50%	20%	0%
	전력량요금	50%	30%	10%	0%

※ 한국전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자가소비용)

구분	기본요금 (원/kw 당)	전력량요금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저압	2,390	경부하	57.6	58.7	80.7
		중간부하	145.3	70.5	128.2
		최대부하	232.5	75.4	190.8
고압	2,580	경부하	52.5	53.5	69.9
		중간부하	110.7	64.3	101
		최대부하	163.7	68.2	138.8

(VAT, 전력산업기반기금 별도)